

부속서 4-가
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

이 부속서의 목적상, “5 년” 과 같은 연수란 조들의 각 규정의 완전한 이행이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명시된 연수 내에 개시한다는 것을 말한다. 그리고 “2022 년 2 월 28 일” 과 같은 확정일이란 특정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이 개시하는 기간의 종료를 말한다.

주: 조가 특정 항에 대한 언급 없이 아래에 열거된 경우, 그 조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이행 기간이 적용된다.

브루나이다루살람

제 4.13 조	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	2022 년 2 월 28 일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제 4.18 조	재심 및 불복청구	2023 년 3 월 31 일
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캄보디아

제 4.9 조	도착 전 처리	5 년
---------	---------	-----

제 4.11 조	상품의 반출	
----------	--------	--

2. 상품의 반출 기간(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필요한 정보의 제출로부터 48 시간 내)	5 년
--	-----

6. 부패성 상품의 반출(가능한 한도에서 6 시간 미만)	5 년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8. 부패성 상품에 대한 보관 시설
및 절차 5 년

제 4.12 조 정보기술의 적용

2. 선적의 도착 전 정보 제출
그리고 위험관리를 위한 전자적
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
정보기술 사용 5 년

4. 전자적으로 제출된
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성 5 년

5. 국제 표준 또는 방법 5 년

6. 전자적으로 제출된
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
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그리고
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5 년

제 4.13 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5 년

제 4.15 조 특송화물

1.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
대한 절차의 적용범위

가. 도착 전 처리 5 년

나. 정보의 단일 제출 5 년

다. 서류 요건의 최소화 5 년

라. 가능한 한 신속하게,
그리고 가능한 경우 6 시간
내에 특송화물의 반출

마.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
관세가격에 관하여
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취급

제 4.19 조 관세 협력 5 년

중국

제 4.4 조 일관성 5 년

인도네시아

제 4.10 조 사전심사결정 2022 년 2 월 28 일

제 4.14 조 위험관리 2022 년 2 월 28 일

라오인민민주공화국

제 4.10 조 사전심사결정

2. 신청인의 법적 대리 또는 등록 3 년

3.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위한 절차	3 년
7. 사전심사결정의 유효성	5 년
8.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철회, 변경 또는 무효화의 이유 통보	5 년
9. 사전심사결정의 소급적인 철회, 변경 및 무효화	5 년
10. 사전심사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.	5 년
11. 사전심사결정 절차의 공표	3 년
12.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	3 년

제 4.11 조 **상품의 반출**

1.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채택 또는 유지	3 년
2. 상품의 반출기간(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필요한 정보의 제출로부터 48 시간 내)	3 년
3.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상품의 선별	3 년
4. 관세, 조세,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 전 상품의 반출	3 년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5. 상품을 검사, 유치, 압수 또는
몰수할 권리 | 3 년 |
| 6. 부패성 상품의 반출(가능한
한도에서 6 시간 미만) | 5 년 |
| 7.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
부패성 상품에 우선순위 부여 | 3 년 |
| 8. 부패성 상품에 대한 보관 시설 및
절차 | 5 년 |

제 4.12 조 정보기술의 적용

- | | |
|---|-----|
| 2. 선적의 도착 전 정보 제출 그리고
위험관리를 위한 전자적 또는
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기술
사용 | 3 년 |
| 3.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
대중에 공개 | 3 년 |
| 4. 전자적으로 제출된
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성 | 5 년 |
| 5. 국제 표준 또는 방법 | 5 년 |
| 6. 전자적으로 제출된
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
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그리고 국제 | 5 년 |

포럼에서의 협력

제 4.13 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5 년

제 4.14 조 위험관리

1. 위험관리시스템의 채택 또는 유지 3 년

제 4.15 조 특송화물

1.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
대한 절차의 적용범위

가. 도착 전 처리 3 년

나. 정보의 단일 제출 5 년

다. 서류 요건의 최소화 5 년

라. 가능한 한 신속하게,
그리고 가능한 경우 6 시간
내에 특송화물의 반출

마.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5 년
관세가격에 관하여 가호부터
라호까지의 취급

바.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5 년
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
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의
규정

2. 상품의 반입을 검사, 유치, 압수, 몰수, 또는 거부하거나 사후심사를 수행할 권리. 추가 정보 및 비자동 허가 요건을 요구할 권리.

말레이시아

제 4.15 조 특송화물 2022 년 2 월 28 일

미얀마

제 4.4 조 일관성 5 년

제 4.5 조 투명성 5 년

제 4.6 조 문의처 2 년

제 4.7 조 통관 절차 5 년

제 4.9 조 도착 전 처리 5 년

제 4.10 조 사전심사결정

1.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및 5 년
사전심사결정의 종류(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
2. 신청인의 법적 대리 또는 5 년
등록(제 1 항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
3.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위한 5 년
절차(제 1 항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4.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5 년
일정(제 1 항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5.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5 년
거부 통보(제 1 항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6. 추가 정보가 특정 기간 내에 5 년
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(원산지 규정)
요청의 거부(제 1 항나호와 관련)
7. 사전심사결정의 유효성(제 1 항나호 5 년
및 다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 및 평가)
8.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철회, 5 년
변경 또는 무효화의 이유 (분류, 원산지 규정 및 평가)
통보(제 1 항가호, 나호 및 다호와
관련)
9. 사전심사결정의 소급적인 철회, 5 년
변경 및 무효화(제 1 항가호, 나호 및 (분류, 원산지 규정 및 평가)
다호와 관련)
10. 사전심사결정은 구속력을 5 년
가진다(제 1 항나호와 관련). (원산지 규정)
11. 사전심사결정 절차의 5 년
공표(제 1 항나호와 관련) (원산지 규정)

제 4.15 조 특송화물

1.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 대한
절차의 적용범위

가. 도착 전 처리	5 년
나. 정보의 단일 제출	5 년
다. 서류 요건의 최소화	5 년
라. 가능한 한 신속하게, 그리고 가능한 경우 6 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	5 년
마.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하여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취급	5 년
바.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의 규정	5 년

제 4.16 조 사후심사

2. 사후심사를 위한 인 또는 탁송물의 선별 5년

3.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의 사용 5년

	4. 위험관리 적용 시 사후심사의 결과 활용	5 년
제 4.17 조	반출 시간 연구	5 년
제 4.19 조	관세 협력	5 년
제 4.20 조	협의 및 접촉선	5 년
베트남		
제 4.9 조	도착 전 처리	2023 년 12 월 31 일
제 4.10 조	사전심사결정	2021 년 12 월 31 일
제 4.11 조	상품의 반출	2021 년 12 월 31 일
제 4.13 조	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	2023 년 12 월 31 일
제 4.14 조	위험관리	2023 년 12 월 31 일
제 4.15 조	특송화물	
	1. 특송화물에 대한 절차의 적용범위	
	라. 가능한 한 신속하게, 그리고 가능한 경우 6 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	2023 년 12 월 31 일
제 4.16 조	사후심사	2021 년 12 월 31 일